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합52297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안

담당변호사 박애성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1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전산시스템 통합, 구축, 종합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 통신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개발, 운용, 서비스 및 기타 종합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서약서의 존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 1. 22.자 협력업체 준수 서약서가 D 및 피고 명의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협력업체 준수 서약서>

원고와 D(이하 '구매자')간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와 거래질서의 안정화를 위하여 본인(피고)은 구매자의 연대보증인임을 확인하며, 구매자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한다.

1. 구매자는 원고의 협력업체로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모든 거래내용에 대한 계약이행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고객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배상하기로 한다.
 3. 구매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관련 제반 법령 위반 행위로 원고에 손해 발생 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구매자는 업무수행 과정 및 종료 후 보안 위반행위로 원고에 손해 발생시 구매자와 본인은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본인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확인 후 서명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사와 본인, 회사와 본인 소속회사간의 계약상의 책임 및

의무를 다하기 위한 협력업체 준수서약서 작성 및 제출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 시 필수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사는 위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

4)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사와 관련된 상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본인은 구매자와 연대하여 상기 내용을 이행할 것을 재차 약정하기로 한다.

2020. 1. 22.

구매자 D (날인)

본인(연대보증인) B(피고) (서명)

원고 귀중

다. D의 발주 및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1) D는 2020. 4. 3. 원고에게 213,479,200원 상당의 E공사를 위한 물품 공급을 발주하면서,
‘납품기한 : 납품 요청 후 3일 이내, 납품 장소 : 원청사 지정 장소, 결제조건 : 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을 발주조건으로 명시하였다.

2) D는 2021. 1. 27. 원고에게 F 주식회사 2021년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275,000,000원[= 2021년 1월 유지보수료 21,200,000원 + 2021년 2월 내지 12월 유지보수료
합계 228,800,000원(= 20,800,000원 × 11) + 부가세 25,000,000원]으로 정하여 발주하면서,
‘유지보수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술지원 내역 : RMA, Case-Open,
주요이슈 장애처리 지원, 결제조건 : 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을 발주조건으로 명시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28., 2021. 11. 30. 및 2021. 12. 30. 공급받는 자를 D로 하고, 품목을 ‘N/W
유지보수’로 하여 합계금액 22,880,000원(= 공급가액 20,800,000원 + 세액 2,08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D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채권신고 등

- 1) 서울회생법원은 2022. 1. 25. D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2021하합100416호).
- 2) 이에 원고는 D의 파산관재인 G에게 D에 대하여 216,119,2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파산관재인이 원고의 위 신고채권액 중 68,640,000원만 시인하고, 나머지 147,479,2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가, 2022. 6. 27. 위 147,479,200원에 대한 이의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D와 사이에 E공사를 위한 물품을 판매하고, F 주식회사 2021년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각 발주서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전부 납품하거나 제공하였다. 그런데 D는 물품대금 213,479,200원 중 66,000,000원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147,479,200원(= 213,479,200원 - 66,000,000원)을 지급하고 않았고, 2021년 10월 내지 12월분 용역대금 합계 68,640,000원(= 22,880,000원 × 3)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D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216,119,200원(= 147,479,200원 + 68,640,000원)의 채무가 있다.

한편 D의 실질 운영자는 H였고, H의 모인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6,11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갑 제1호증으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서약서상에 자필로 기재된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모두 피고의 필체가 아니고, 피고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서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원고 또한 2023. 5. 15.자 준비서면 및 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아들인 H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서명 등이 모두 피고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H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서약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이진경, 판사 이동형